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7. 26.

###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
- 근 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부○준	69.09.14	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	○ 초기상담 이후 지정일에 불출석 ○ 출석통지서에 따른 방문 의무 미이행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철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4. 7. 26. ~ 2024. 8. 9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김제고용센터 진영훈(☎ 063-540-841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